

6.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2년 4월 1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기획조정실장)
- 회부일자 : 2022년 4월 5일
- 상정일자 : 제29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년 4월 15일),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기획조정실장 김정기)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개정(2022. 1. 1. 시행)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(2022. 1. 1. 시행)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 등의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「지방자치법」제159조 및 제16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써 규약 개정을 위해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2022년 1월부터 2단계 재정분권 합의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편입됨. (안 제1조, 안 제5조 제1항제5호, 안 제16조)
-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편입됨에 따라 “발전기금”을 “조합이 관리하는 기금”으로 변경함. (안 제5조제1항제1호·제5호·제7호·제8호, 안 제8조제1항제5호, 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, 안 제14조제2항, 안 제15조, 안 제16조, 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, 안 제28조)
-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편입됨에 따른 관련 부처 및 인원수 변경을 반영함. (안 제6조제2항, 안 제12조제1항, 안 제18조제3항)
-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·기초지원계정 신설.
(안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신설)

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정미정)

○ 이 동의안은

- ▶ 2021. 7월 28일 정부는 지방재정확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‘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’을 확정·발표하였고,

[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요약]

- ◆ 지방소비세율 4.3%p(연 4.1조원) 인상
(연도별 지방소비세율 : ('18년) 11% → ('20년) 21% → ('22년) 23.7% → ('23년) 25.3%)
- ◆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10년간 10조원 규모 '지방소멸대응기금' 도입(연 1조원)
- ◆ 기초연금 등 연 0.2조원 규모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율 인상

- ▶ 발표안 중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, 올해부터 향후 10년간('22년 ~ '31년)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('22년은 0.75조원)을 조성키로 하였음.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·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('22. 1.)하였으며, 개정법령에 따라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⁹⁾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수탁받아 운영하게 되면서 현행 조합 규약 개정을 위해 시·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.

○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개정 절차는,

- ▶ 지방자치법 제176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) 및 제181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) 규정에 따라 규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인 각 시·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약 개정 절차를 완료하게 되며,

《 규약개정절차 》

【안건상정】 → 【조합회의 의결】 → 【안건확정】 → 【시·도 통지】 → 【시·도 의회 승인】 → 【조합에 통지】 → 【행정안전부장관 승인】 → 【의안확정】

○ 이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개정 주요 사항은,

9)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: 수도권 규제합리화('08년)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마련에 따라 2010년 기금설치 및 자치단체조합 설립
 - 조합조직 : 위원 20명(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, 시도 기획조정실장, 지방재정전문가 2명)
 - 기금재원 : 수도권 자치단체 출연금(지방소비세 35%) ※21년까지 4조 2,589억원 조성
 - 기금용도 : 전환사업보전(국가→지방 이양사무), 지자체 재정지원, 용자지원

- ▶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에 새로이 편입되는 지역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 적용(안 제1조, 안 제5조~안 제6조, 안 제8조, 안 제12조~안 제18조, 안 제36조~안 제37조)
- ▶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조합의 구성 위원수 등 확대(안 제1조, 안 제5조, 안 제8조, 안 제13조~안 제17조, 안 제36조~안 제37조)
 - 조합의 심의·의결기구인 조합회의에 행정안전부 균형발전 담당국장과 균형발전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(안 제6조제2항)하여 기존 20명에서→23명으로 확대하였고, 행정안전부 균형발전담당 과장의 실무협의회 참여(안 제12조제1항)와 기금 결산검사 위원을 증원(3→5명)함.(안 제18조제3항)
- ▶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·관리방안 규정(안 제27조~안 제35조)
 - 지방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규약 내용에 반영한 것으로,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(안 제27조, 안 제28조),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(안 제29조),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의 운영안(안 제30조~안 제35조)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음.

○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법과 대구 지역 배분 규모는

- ▶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('22년 0.75조원) 규모의 정부 출연금과 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,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기금이 운용될 예정임.

전체 재원(1조원) 중 광역지원계정에 25%(0.25조원), 기초지원계정에 75%(0.75조원)가 배분되며, 광역지원계정의 90%는 인구감소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에 배분될 예정이며, 기초 지원계정의 95%는 인구감소지역('21.10.19. 행정안전부 지정·고시) 89곳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될 예정임.(참고2)

대구시의 경우 서구와 남구지역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되어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며,

지원 규모는 대구시에 지원되는 광역지원계정*(정액)의 경우 '22년 23억원, '23년 이후 매년 32억원 정도이며, 서구·남구 지역에 배분되는 기초지원계정의 지원액('23년 이후)은 인구감소지역 평균액*을 기준으로 '22년 60억원, '23년 이후 매년 80억원 정도로 추정됨. 다만 기초지원계정의 규모는 각 기초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계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역별 평균액의 최대 200%까지(160억원) 지원받게 됨에 따라, 사업신청 전 치밀한 추진전략과 계획수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.

* 광역지원계정은 정액 지원(인구감소지수, 재정·인구 등 고려)

** 기초지원계정 지역별 평균액('23년 이후) : 약 80억원(7,500억원×95%/89곳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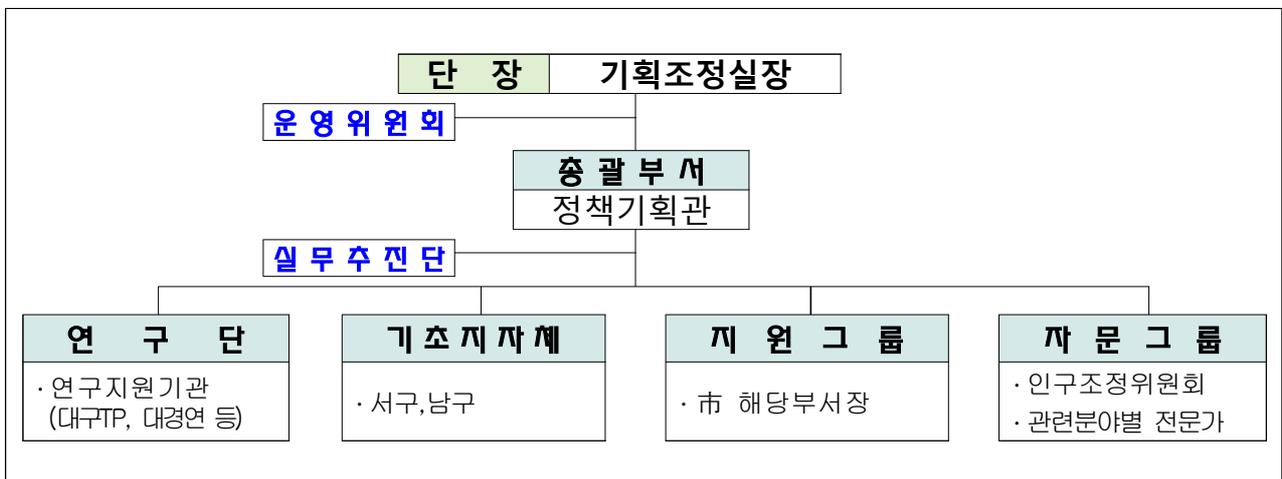
○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

- ▶ 이번에 제출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지방이 직면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쟁력 저하 등 현 위기

추세를 전환하고,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정책사업 추진 기회를 지자체 스스로 갖게 된 점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. 향후 지방소멸기금에 더해 중앙정부의 지방을 살리는 여러 노력들이 확대·강화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자체는 정책 공조와 연대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임. 한편, 대구시는 서구·남구 기초지자체의 인구정책 수립역량을 배가하고, 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, 「인구감소 위기 대응 추진단」을 발족하였으며, 추진단 산하에 ‘운영위원회’와 ‘실무추진단’을 꾸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발굴 및 계획수립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간 상황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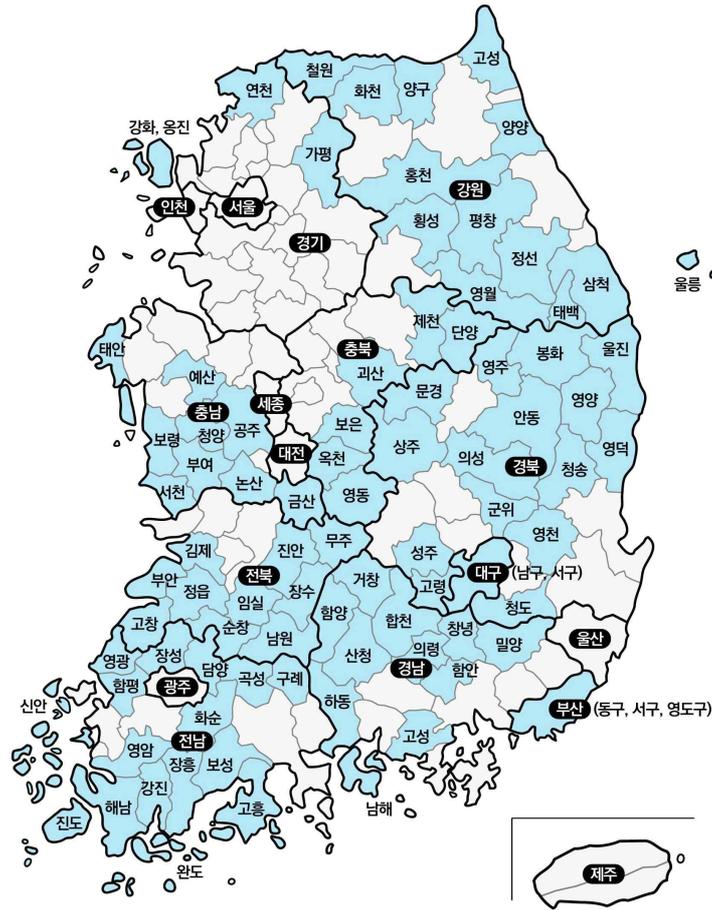
대구시는 서구·남구지역 특색에 맞는 실효적인 계획수립과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여, 두 지역의 인구감소 추세를 전환하고 지역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임.

【인구감소위기대응 추진단】



참고 1

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(89개 기초지자체)



| | |
|---------|--|
| 부산 (3) | 동구 서구 영도구 |
| 대구 (2) | 남구 서구 |
| 인천 (2) | 강화군 옹진군 |
| 경기 (2) | 가평군 연천군 |
| 강원 (12) |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|
| 충북 (6) |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|
| 충남 (9) |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|
| 전북 (10) |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|
| 전남 (16) |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|
| 경북 (16) |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|
| 경남 (11) |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|

참고 2

기초·광역 지원계정별 배분금액(안)

□ 기초지원계정 (예시)

| 구분 | 인구감소지역 (89개) | | | | | | 관심지역 (18개)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-|--|--|
| 배분비율 | 95% | | | | | | 5% | |
| 배분규모 | 5,343.75억('22년) | | | | | | 281.25억('22년) | |
| | 7,125억('23년) | | | | | | 375억('23년) | |
| 최대한도 | 120억('22년) | | | | | | 30억('22년) | |
| | 160억('23년) | | | | | | 40억('23년) | |
| 기초지자체명 | 부산 부산 부산 인천 인천 대구 대구 경기 경기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충북 충북 충북 충북 충북 충북 충북 충남 충남 | 동구 서구 영도구 강화군 옹진군 남구 서구 가평군 연천군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|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전북 전북 전북 전북 전북 전북 전북 전북 전북 전북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|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| 전남 전남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| 해남군 화순군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| 부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전 대전 경기 경기 강원 강원 강원 전북 경북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| 금정구 중구 동구 동구 대덕구 동구 중구 동두천시 포천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익산시 경주시 김천시 사천시 통영시 |

※ 지역별 최대한도는 배분규모/지역수로 산출한 평균액의 200%로 설정

□ 광역지원계정 (예시)

(단위: 억원)

| 시·도 | 전남 | 경북 | 강원 | 전북 | 경남 | 충남 | 충북 | 부산 | 대구 | 광주 | 제주 | 인천 | 대전 | 울산 | 경기 | 세종 | 서울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|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배분금액 ('22년) | 378 | 363 | 258 | 240 | 223 | 180 | 119 | 25 | 23 | 14 | 14 | 12 | 9 | 9 | 4 | 0 | 0 |
| 배분금액 ('23년) | 505 | 485 | 345 | 320 | 297 | 240 | 159 | 35 | 32 | 19 | 19 | 16 | 13 | 13 | 5 | 0 | 0 |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 의 | 답 변 |
|--|---|
| <p>○ 지방소멸기금사업 시행은 결국 기초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을 평가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형태죠?</p> <p>○ 1조 원 단위의 사업비가 전국의 인구 감소지역에 배분된다고는 하나, 결국은 행안부가 사업검토 후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, 지역 현실에 맞는 계획 수립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됨. 계획과 현실 간의 많은 괴리로 인해 실효적인 사업이 될지 의문이 생기는데?</p> | <p>○ 네.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통해 차등 지원하게 됨.</p> <p>○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, 정주 여건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사업수립 지침이 내려진 상태이며,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, TP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.</p> |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수정안 요지

- 없 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